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정 범죄 행위자에 대한 치료감호 금지〉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633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병 섭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치료감호제도 개요	3
2. 특정 범죄 행위자에 대한 치료감호 금지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해민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7. 22.
3. 회 부 일 : 2025.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음.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동일·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

그러나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이 이루어지거나, 심신미약, 보석으로 인한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거나, 치료감호 등 의료적 조치를 내세워 실질적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음.

이에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를 지은 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

III. 검토의견

1. 치료감호제도 개요

-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 상태에서 범죄적 행위를 한 자가 재범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과 개선 그리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제도¹⁾로,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에 해당함²⁾.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는 치료감호시설³⁾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치료감호자의 죄명별·병명별 수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
- 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①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 2) 치료감호는 고도의 사회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사회방위 수단인 형벌을 과할 수 없거나 형벌을 기대할 수 없는 범죄성 심신장애자 및 마약류 중독자 등을 일정한 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치료감호는 책임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형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 등을 정기간 또는 무기한 정신병동 등 일정한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는 한편,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조치로서 ‘대인적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에 속한다.
「헌재 2010. 4. 29. 2008헌마622」
- 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① 제16조제1항에서 “치료감호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립법무병원
2.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이라 한다)
② 지정법무병원은 피치료감호자를 다른 환자와 구분하여 수용한다.
③ 국가는 지정법무병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 운영, 치료, 경비보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치료감호자의 죄명별·병명별 수용 현황>

(단위: 명, %)

죄명별	총계	살인	성폭력	폭력	방화	절도	강도	치사	약물	기타
	795	285	116	146	45	40	26	22	25	90
	(100%)	(35.8)	(14.6)	(18.4)	(5.7)	(5.0)	(3.3)	(2.8)	(3.1)	(11.3)

병명별	총계	조현병	지적발달장애	정신성적장애	조울증	망상장애	알코올	약물(마약등)	인격장애	뇌전증	충동조절장애	기타
	795	470	52	28	77	44	34	27	10	4	9	40
	(100%)	(59.1)	(6.6)	(3.5)	(9.7)	(5.5)	(4.3)	(3.4)	(1.3)	(0.5)	(1.1)	(5.0)

자료: 2024 범죄예방정책통계분석

- 치료감호는 ① 대상범죄의 형 선고와 함께 병과⁴⁾되는 경우, ② 대상범죄는 형사처벌을 면하는 대신 치료감호만 선고받는 경우⁵⁾, ③ 대상범죄에 대한 공소제기 없이 치료감호만 독립적으로 청구되어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⁶⁾로 구분되는데,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는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게 되고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치료감호의 판결 등) ② 치료감호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이 서로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법원은 피고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사건에서 인용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고, 피고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사건에서 인용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

「2021. 1. 28. 선고 2019헌가24, 2019헌바404(병합)」

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치료감호의 판결 등) ② 치료감호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치료감호의 독립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형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
2.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그 고소·고발이 없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反)하여 논할 수 없는 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3.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형 집행기간에 포함됨⁷⁾.

-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할 시 치료감호의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고, 법정기간 한도⁸⁾ 내에서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피치료감호자에게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 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심사⁹⁾를 해 형기가 남은 경우는 교도소로 이송하고, 치료감호만을 선고받았거나 잔여 형기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을 통해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併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②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15년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2년

③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이하 “살인범죄”라 한다)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가종료 등의 심사·결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假終了)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2. 특정 범죄 행위자에 대한 치료감호 금지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 이적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u><신 설></u>	제4조의2(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제한)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없다. 1.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의 죄를 지은 자 2.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및 제2장(이적의 죄)의 죄를 지은 자

- 현행법은 치료감호대상자를 심신장애 상태, 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규정¹⁰⁾하고 있으며,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죄를 지은 자만 대상범죄를 성폭력범죄¹¹⁾로 한정하고

1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飲)·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11) 제2조의2(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제2조제1항제3호의 성폭력범죄는 다음 각 호의 범

그 밖에 치료감호대상자는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및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 및 제2장(이적의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를 금지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치료감호 청구 금지 범죄>

구분	조항	구성요건	형량
「형법」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에서 국가권력 배제 국헌문란 목적 폭동을 일으킴 1. 우두머리 2. 중요종사자 3. 부화수행, 단순관여자	사형, 무기징역·금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금고 5년 이하 징역·금고
	제88조(내란목적 살인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에서 국가권력 배제 국헌문란 목적 사람을 살해	사형, 무기징역·금고
	제89조(미수범)	제87조 및 제88조의 미수범	
	제90조(예비등)	제87조 및 제88조 목적 예비·음모·선전·선동	3년 이상 징역·금고
「형법」 외환의 죄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 대한민국에 전단을 열게 함 등	사형, 무기징역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	사형
	제94조(모병이적)	적국을 위해 모병한 자 모병에 응한 자	사형, 무기징역 무기, 5년 이상 징역
	제95조(시설제공 이적)	군용에 공하는 병기 등 물건을 적국에 제공	사형, 무기징역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05조의2(상습범)·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구분	조항	구성요건	형량
	제96조(시설파괴 이적)	적국을 위해 군용시설 파괴 등	사형, 무기징역
	제97조(물건제공 이적)	군용에 공하지 않는 병기 등 적국 제공	무기, 5년 이상 징역
	제98조(간첩)	적국을 위하여 간첩, 군사상 기밀 누설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
	제99조(일반이적)	기타 적국에 군사상 이익 공여	무기, 3년 이상 징역
	제100조(미수범)	제92조~제99조의 미수범	
	제101조(예비등)	제92조~제99조 목적 예비·음모·선전·선동	2년 이상 징역
	제103조(전시군 수계약불이행)	전쟁·사변에서 정부에 대한 군수품 계약 불이행	10년 이하 징역
「군형법」 반란의 죄	제5조(반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킴 1. 수괴 2. 중요임무 종사자, 살상·파괴·약탈 행위자 3. 부화뇌동, 단순 관여자	사형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금고 7년 이하 징역·금고
	제6조(반란 목적 군용물 탈취)	반란 목적 작당해 병기, 탄약 등 탈취	5조의 예로 처벌
	제8조(예비등)	제5조 및 제6조 목적 예비·음모·선전·선동	5년 이상 징역·금고
	제9조(반란 불보고)	반란을 알고도 상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함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반란 불보고	2년 이하 징역 7년 이하 징역
「군형법」 이적의 죄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군대 요새 또는 군용 함선 등을 적에게 제공	사형
	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	적을 위해 군용시설 등 파괴	사형
	제13조(간첩)	적을 위해 간첩행위를 함, 군사상 기밀 누설	사형, 무기징역
	제14조(일반이적)	적을 숨기거나 비호하는 행위 등	사형, 무기, 5년이상 징역
	제15조(미수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미수범	
	제16조(예비 등)	제11조~제14조 목적 예비·음모·선전·선동	3년 이상 유기징역

-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비교하여 위법성이 높아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¹²⁾로, 치료감호를 통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경우 실질적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러한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 치료감호 제도의 기본적 취지는 책임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형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 등을 일정 기간 또는 무기한 일정한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는 한편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범죄의 종류보다는 정신질환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등 범죄자의 상태에 따라 그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등을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는 치료감호 제도의 이러한 취지를 고려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1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개정안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이적죄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를 치료감호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죄의 경우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자 등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다른 점과 같이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금지 대상 범죄의 양태가 각각 다르고 법정형 등 범죄의 불법성에 대한 법적 평가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에도 치료감호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범죄의 죄질과 양태 등을 고려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각 범죄별 치료감호 금지 여부 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와 이적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형의 감경 등을 제한하는 다수의 법률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안들과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내란·외환죄 등 범죄자에 대한 시혜적 조치 제한 법률 현황>

법률안 명	주요 내용	관련 법률안 건 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외환죄·반란죄·이적죄를 범한 자를 사면·감형·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19건 ¹³⁾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외환죄를 범한 자를 가석방 및 심신미약 사유 감경 대상에서 제외함	4건 ¹⁴⁾

법률안 명	주요 내용	관련 법률안 건 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외환죄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 금지	1건 ¹⁵⁾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란죄·이적죄를 범한 자를 가석방 및 심신미 약 사유 감경 대상에서 제외함	2건 ¹⁶⁾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란죄·이적죄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 금지	1건 ¹⁷⁾

○ 개정안에 대해 관련기관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법무부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약물중독 및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등 비정상적 정신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가 청구의 중요한 요건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범죄 종류를 일률적으로 치료감호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 목적 및 체계를 고려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13) 의안번호 제2205402호, 제2206462호, 제2206476호, 제2206489호, 제2206572호, 제2206714호, 제2207016호, 제22070131호, 제2207130호, 제2207190호, 제2207362호, 제2207393호, 제2207448호, 제2208018호, 제2208387호, 제2209636호, 제22010353호, 제22010407호, 제22011626호

14) 의안번호 제2206872호, 제2207636호, 제2208385호, 제2211621호

15) 의안번호 제2211624호

16) 의안번호 제2207638호, 제2211625호

17) 의안번호 제2211672호

문 의 처
02-6788-5065